

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11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업무담당 직원의 보험·공제등에 가입이 의무화되고,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 취지 및 동 표준안에 맞추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인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(안 제2조).
- 나. 보험가입금액(최저)을 정함 (안 제3조).
- 다.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가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.
- 라.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·관리하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별 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 첨

-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연 1,970천원(내역 별첨)

□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 (행정자치부)

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· 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 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 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 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 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 · 관리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·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자치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민자치과장 장 동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민원행정담당 김 학 창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혜 정 (행정 2135)